

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

-사법보좌관제도 발전 방안-

2025. 1.

사법정책자문위원회

1. 논의의 필요성

-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법보좌관제도는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법보좌관이 비송적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, 법관의 업무 경감 및 쟁송성 사건에서 법관의 충실한 심리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음
- 사법보좌관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되었고 제도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, 보다 향상된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위하여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2.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방향의 지향점

- 효율적인 사법조직을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법보좌관 제도의 도입 취지임
 - 헌법재판소도 “법원조직법에서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·형식적 절차 업무를 법관이 아닌 자로서 법원일반직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것이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아울러 전체적인 사법 서비스를 향상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음 (헌법재판소 2009. 2. 26. 선고 2007헌바8,84(병합) 전원재판부)
 - 한정된 국가재정과 인적자원의 제약 하에서 고효율·양질(高效率·良質)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이 사법보좌관 제도라고 할 수 있음

- 법관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하고 사법보좌관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송적 업무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

- 사법보좌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, 사법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

3. 주요 쟁점

- ①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판장기화 해소 기여
 - 2005년 사법보좌관 제도 시행 이후 2014년, 2016년, 2018년, 2020년 총 네 차례에 걸쳐 법관 업무가 이전되었던 것에서 보듯이 그동안 업무영역 확대는 사법보좌관 제도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음
 - 이러한 방향성을 계승하여 비송적·형식적 절차 업무의 이관을 통해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, 쟁송적 사건과 비쟁송적 사건 전체적으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성 있음
- ② 사법보좌관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
 - 확대되는 업무영역에서 사법서비스가 저하되지 아니하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에서 한층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법보좌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
 - 역량강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에 걸쳐 인사제도, 교육제도 개선 등과 함께 연구되어야 함
 - 사법보좌관과 그 배후자원이 되는 법원사무관·법원주사(보)에게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법보좌관 상호간 업무지식 등 공유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

4.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



- 저분쟁성 사건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안
- 확대되는 업무영역 관련하여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
 - 교육제도를 내실화 하여 사법보좌관 및 배후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
 - 수석사법보좌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업무지식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등 사법서비스를 제고하는 방안